##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의결안건 제221호 관련)

2021. 10. 15.

증권 선물 위원회

- 1. 일 시 : 2021년 10월 15일(금) 14:00~18:08
-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 3. 출석위원
  - 이 명 순 위 원
  - 이 상 복 위 원
  - 이 준 서 위 원
  - 박 재 환 위 원

## 4. 회의경과

- □ 의결안건 제221호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 안』을 상정함.
  -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우리은행에서 펀드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 부행장보임. 펀드 불완전판매의 과태료 산정에 관한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법령의 취지나 구체적 판매과정, 타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감경이 필요한부분이 있는 것 같음.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해서 부디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림. 다시 한 번 ○○사태로 초래된 여러피해와 걱정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피해배상과 재발방지에 대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림.
  - ▶ (진술인) ㈜우리은행의 법률대리인임. 불완전판매 관련한 과태료 지적사항이 3가지가 있는데 위반동기는 모두 '고의'로 되어 있고, 그 결과도 모두 '중대'로 적용해서 과태료 최대한도인 32억 6,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투자광고 규정 위반 관련한 과태료는 광고 대상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만 위반동기는 모두 '고의'를 적용하고 있고 특히 손실이 발생한 펀드가 광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가입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결과를 모두 '중대'로 해서 과태료 상한액인 1억 원씩을 적용해서 39억 원을 적용했음. 그 결과 합계 49억 원

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진술서를 설명 드리기 전에 은 행에서 간곡히 전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간단히 올리고 설명을 이어 나가겠음. 우선, ㈜우리은행은 ○○사태와 관 련해서 고객과 금융당국에 여러 걱정을 끼치고 이 자리까 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매우 죄 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 ㈜우리은행은 고객보호 및 준 법경영을 최우선가치로 삼았지만 ○○판매 과정에서 일부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겸허하게 그 책임을 인정하고 고 객보상과 향후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음. 다 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증선위 심사대상이 된 조치내용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법률적 기준에 따라 서 결과를 '중대'로 산정하고, 동기를 '상'으로 인정해서 사실상 최상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 사 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펀드판매에 관해서 은행 경영진의 부당권유책임이 있다고 보는 금감원의 시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금감원 말씀에 따르더라도 판매과정에서 거짓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 적으로 고지했다는 통상적인 부당권유 사례가 아니라 은 행 임원이 펀드의 만기도래시에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그에 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해당 임원은 지난 제재심 과정에서 그런 유동성 문제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했지만 상품판매 관련한 은행 임원제재에서 초유의 '면직'이라는 조치를 받았고 은행장 도 관련한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지만 '직무정지'라는 유례없는 조치를 받았음. 부당권유는 형사처벌까지 가능 한 매우 위법성이 높은 행위인데 이러한 사건에서 임원이

부당권유를 했다는 이유로 은행이 그 책임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었음. 당연히 제재심 과정에서 은행장과 임원의 제재가 감경되었지만 여전히 중징계 위 기에 처해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다투는 과태료 처 분도 너무나 과중하기 때문에 증선위의 현명한 판단을 구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음. 오늘 여러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은행에 ○○펀드의 부 당권유 책임이 있다는 오해나 편견 없이 이 사건을 냉철 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림. 한 가지 예를 들더라도 ○○펀드 관련해서 노골적인 행위가 있었고 운용사 책임자에 대하여 중형이 선고되고 관련된 증권사 임직원들도 대거 기소되었지만 ㈜우리은행 임직원 은 어느 누구도 기소는 물론 피의자로 조사도 받지 않았 음. 이상 이 사건 심의에 있어서 꼭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음. 설명확인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말씀드리 겠음.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 6]에 따 르면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실 미발생의 경 우에는 결과를 '경미'로 보고, 설명의무는 이행했지만 확 인절차만을 누락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를 감경하도 록 정하고 있음. 이 사건에서 일괄해서 결과를 '중대'한 것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금 전 액을 반환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경미'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임. 그리고 26건 지적 된 것 중 2건에 관해서는 고객으로부터 설명의무를 이행 했음을 사후에 추가로 저희가 확인해서 고객의 확인서를 제출했음. 그리고 다른 4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직전에 동일한 상품에 가입하면서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확인

시켜 주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26건 모두에 대 해 설명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는데 설명 의무는 이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50% 감경이 적 용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림. 설명의무 위반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동기를 '상'으로 분류하셨지만 고객들은 모두 ㈜우리은행의 소중한 고객이고 오랫동안 거래를 이어오신 분들인데 고의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동기가 전혀 없음. 그런 사정을 감안하면 단순한 형식적 이유나 절차 누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위반동기는 '하'로 정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저희가 투자자확인서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재했는데 일괄적으로 쭉 설명하고 확인 하는 절차를 보더라도 이후 내용에 서명이 없다고 하더라 도 형식적인 실수이지, 이것이 어떠한 고의로 위반할 동 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음. 설명서 교부는 받은 사람인데 설명확인의무 기재만 누락 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부분은 단순절차 누락임. 위 반행위들은 포괄하여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 과 관련하여 법무부 201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서 규정을 제시했는데 포괄일죄 규정을 좀 폭넓게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림. 설명서 교 부의무 위반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음. 이 사건에서 펀드판 매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 되고 있는데 금감원에서는 해당 표시(check)란에 기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입 증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 이미 담당팀장이 퇴사해서 은행이 모든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만 25건 중에 3건을 고객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음. 그 당시

에 설명서를 받았는데 단순 누락되었다는 말씀이 있음. 저희가 이번에 시간에 쫓기고 이미 피해가 발생한 고객한 테 부탁을 드리기 조심스러워서 3건의 확인서만 받았지만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단순 기재누락에 비해서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생 각을 가지고 있음. 과거 증선위에서도 충분히 설명서가 교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위반동기를 '상'에서 '하'로 감경한 사례가 있음. 이 건에서 또다시 '상'으로 하 시는 것은 종전 증선위 선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 이 듦.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 자권유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건으로 더 무거운 설명확인의무 위반으로 중복지적된 것이 1건 있음. 이 건 은 지적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봄. 마찬가지로 규범적으로 평가해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 위의사 단일성이 있으면 포괄일죄의 적용을 폭넓게 적용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림. 이 부분에 관해 서는 나중에 위워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저희가 조금 더 상 세한 판례에 기초해서 설명을 올리고자 함. 투자광고규정 위반으로 아주 과중한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음. 우선 광 고의 개념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면 광고는 모름지기 기본 법률이나 금융위 규정에 따르더라도 널리 알리거나 제시 하는 것 혹은 불특정다수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까지 일률적으로 투자광고로 봐서 과중한 과태료가 산정 된 것 같음. 자료에 실제 저희의 작성례를 보시면 여신상 품에 가입에 있어서 금리나 상품에 관한 아주 일반적인 안내만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중징계 대상이 되는 투 자광고를 위반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음. 이 부분을 법

률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림. 그리고 39건에 관해 서 일괄적으로 결과가 '중대'하다고 되어 있음. 이것이 실 제 건수는 약 15,000건에 이르는 많은 건수들임. 저희가 이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여력은 못 되었습니다만 그중에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을 추적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 번 해 봤음. 5건 이하 공식 문자메시지만 보낸 직원들의 문 자메시지를 추적한 결과 총 15건이었는데 그중에 2건만 상품에 가입했고 해당 상품에서는 모두 이익이 발생한 경 우임. 이 경우를 보더라도 일률적으로 '중대'로 해서 1건 당 1억 원의 고액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좀 부당한 측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펀드에 관해서는 투자금 전액이 반환되었는데 이 부분도 과중하다고 생각되므로 부과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증선위 의 사록을 적시했는데 그 당시에도 실제로 투자손실이 발생 하지 않은 펀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경한 사례가 있음. 이 건에서도 전혀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건에 관해서는 '경미'아니면 최소한 '보통'으로 감경해야 되는 것이 아 닌가 함. 이것 역시 포괄일죄가 좀 더 넓게 인정될 수 있 는 건이라고 생각함. 내용을 보더라도 총 문자메시지 1건 만 보낸 직원이 16명임. 그런데 그와 같은 혐의자들을 모 두 일률적으로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한 것을 너무 과중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림. 10억 원 한도로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을 이 건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본 사태로 인한 피해와 걱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 고, 감독당국의 지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피 해배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모쪼록 관련 법리와 형평 에 부합하는 과태료 처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림.

○ (위원장) 오늘 변론하신 부분 중 부족한 내용은 다음번 증선 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자료제출 요구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음.

▷ 진술인이 퇴장함.

ㅇ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